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
----------	-----

제출일자 : 2005. 12. 21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 1. 제안사유

- 가. 2005. 7. 1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중복조항을 삭제하고
- 나.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 일부조정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중복조항 삭제
  - 근무시간(제13조 내지 제16조의2), 연가일수(제18조), 겸직허가(제26조), 정치적 행위(제27조)를 삭제함
- 나.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3조)
  - 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일부 축소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5. 10. 31 ~ 11. 19(별도의견 없음)
- 마. 기 타 : 조례표준안 시달(행자부 지방공무원제도팀-1619, 2005. 7. 15)

##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3조 내지 제16조의2)을 삭제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본문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3장(제26조)을 삭제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b>제2장 근무시간등</b>	<u>&lt;삭 제&gt;</u>
<b>제13조(근무시간)</b>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개정 97.4.15, 2004.7.9, 2004.11.1>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96.4.15, 2004.7.9>	<u>&lt;삭 제&gt;</u>
<b>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b>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6. 4.15>	<u>&lt;삭 제&gt;</u>
<b>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b> ①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u>&lt;삭 제&gt;</u>
<b>제16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b> 구청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u>&lt;삭 제&gt;</u>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lt;개정 2002.4.15, 2004.7.9&gt;) ①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들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lt;신설 97.4.15, 개정 2002.4.15, 2004.7.9&gt;</p> <p>② 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lt;신설 97.4.15, 개정 2002.4.15, 2004.7.9&gt;</p>	<p>&lt;삭 제&gt;</p>																		
<p>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p>	<p>&lt;삭 제&gt;</p>																		
<p>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96.4.15&gt;</p>	<p>&lt;삭 제&gt;</p>																		
<table border="1"> <thead> <tr> <th>재 직 기 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 <td>3월 이상 6월 미만</td> <td>4일</td> </tr> <tr> <td>6월 이상 1년 미만</td> <td>7일</td> </tr> <tr> <td>1년 이상 2년 미만</td> <td>10일</td> </tr> <tr> <td>2년 이상 3년 미만</td> <td>13일</td> </tr> <tr> <td>3년 이상 4년 미만</td> <td>16일</td> </tr> <tr> <td>4년 이상 5년 미만</td> <td>19일</td> </tr> <tr> <td>5년 이상 6년 미만</td> <td>22일</td> </tr> <tr> <td>6년 이상</td> <td>23일</td> </tr> </tbody> </table>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4일	6월 이상 1년 미만	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	6년 이상	23일	
재 직 기 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4일																		
6월 이상 1년 미만	7일																		
1년 이상 2년 미만	10일																		
2년 이상 3년 미만	1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6일																		
4년 이상 5년 미만	19일																		
5년 이상 6년 미만	22일																		
6년 이상	23일																		
<p>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당해년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li> <li>2.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li> </ol>																			

현행	개정안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⑤(생략)  <u>&lt;신설&gt;</u></p> <p>제23조(특별휴가) ①~②(생략)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lt;단서 신설&gt;</p> <p>④~⑤(생략)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lt;개정 96. 4. 15&gt;</p> <p>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표창을 받은 때                      &lt;개정 2005.6.22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gt;</p> <p>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lt;개정 2005.6.22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gt;</p> <p>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p> <p>4.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lt;개정 2005.6.22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gt;</p> <p>5.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lt;신설 96. 4. 15&gt;</p> <p>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lt;신설 96.4.15, 개정 99.12.31&gt;</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⑤(현행과 같음)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제23조(특별휴가) ①~②(현행과 같음)                      ③-----                      -----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p> <p>④~⑤(현행과 같음)                      &lt;삭제&gt;</p> <p>&lt;삭제&gt;</p>

현 행	개 정 안
<p>⑧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 은 7일 이내의 승선평가를 얻을 수 있다. &lt;개 정 96. 4.15&gt;</p>	<p>&lt;삭 제&gt;</p>
<p>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 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 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 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lt;개정 99.12.31&gt;</p>	<p>&lt;삭 제&gt;</p>
<p>⑩(생략) 제24조(휴가기간중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 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⑩(현행과 같음) 제24조(휴가기간중의 <u>토요일 또는 공휴일</u>) 휴가 기간중의 <u>토요일 또는 공휴일</u>은----- ----- ----- -----</p>
<p><b>제3장 영리업무 및 겸직</b></p>	<p>&lt;삭 제&gt;</p>
<p>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 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 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96. 4.15, 2005.6.22 :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gt;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p>	<p>&lt;삭 제&gt;</p>
<p>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lt;개정 96. 4. 15&gt;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 대하는 것</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p> <p>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lt;신설 96. 4. 15&gt;</p> <p>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p> <p>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p> <p>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p> <p>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를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p>	
<p>&lt;신 설&gt;</p>	<p>제27조의2(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적용한다.</p>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7
출산	배우자	3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